##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68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헌승·박성훈·주호영

김소희 · 임종득 · 곽규택

고동진 · 김종양 · 이성권

김형동 · 김선교 · 김도읍

김민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 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의 명칭"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제지원연금 및 세제지원연금계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4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③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④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2
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	
하고 연금계좌[ <u>"연금저축"의</u>	" <u>세제지원연</u>
<u>명칭</u> 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	<u>금"의 명칭</u>
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 <u>연금</u>	
<u>저축계좌</u> "라 한다) 또는 퇴직	<u>세제지원연금계좌</u>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	
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	
태 등으로 인출(이하"연금수	
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	
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	
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	
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	<u>세제지원연금계좌</u>
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	
<u>좌</u> 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u>세제지원연금계좌</u>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	

1.・2. (생략)

② ~ ⑤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